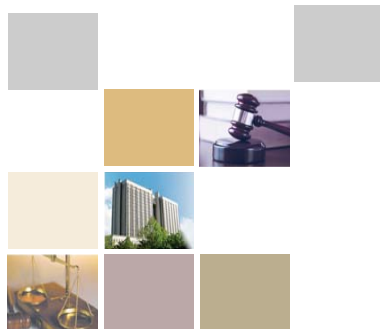


# 민사 항소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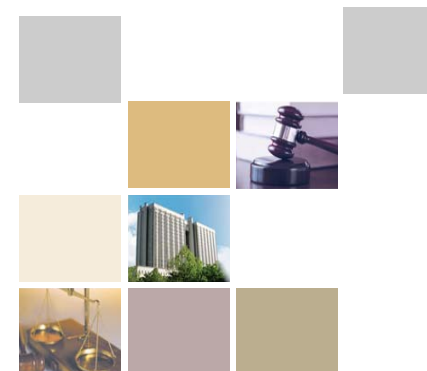
---

## 안내서

민사 항소심 안내서



▶▶ [slgodung.scourt.go.kr](http://slgodung.scourt.go.kr)



## 서울고등법원 안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에 위치한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가 1심 법원으로서 판결하거나 결정한 사건 등을 항소심 또는 항고심으로서 판단하는 법원이므로, 사건의 양이나 중요도 면에서 전국 법원 중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각종 분쟁과 갈등을 법정에서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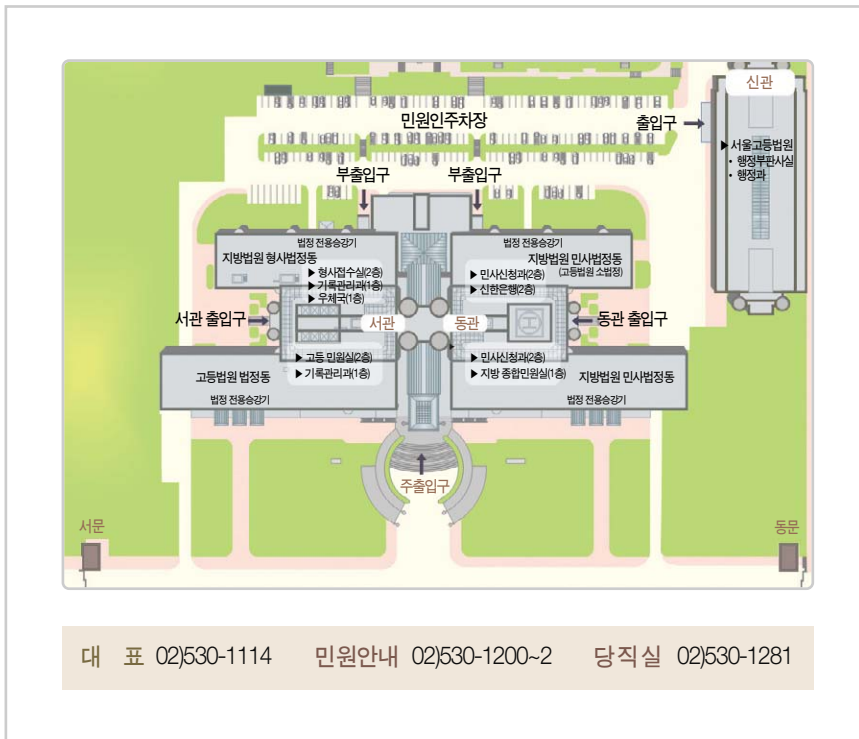
그런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재판절차를 잘 이해하고 재판부가 실제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당사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당사자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한편,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재판절차를 이해하고 법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민사, 형사, 행정의 분야별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안내서가 항소심 재판의 이해를 돕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 7. 1.

서울고등법원장 김진권



## 민사 항소심 재판이란

01

### 항소란 무엇이며 항소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항소란 자신에게 불리하게 선고된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때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를 항소인, 상대방을 피항소인이라 합니다.

항소취지는 1심 판결의 주문 중 어떤 부분에 대하여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지를 특정하여 항소장에 적는 것을 의미하며, 항소취지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정해지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02

### 항소심 재판과 1심 재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항소심 재판은 항소에 의하여 1심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재판으로서, 1심 판결 중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위반 등을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중 당사자가 불복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판단 하지만 청구의 기초가 같다면 청구의 변경이나 확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은 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모든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판단 하게 되므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도 가능하나, 1심에서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 항소장에 대한 '보정명령' 과 '주소보정명령' 이란 무엇이며, 이런 명령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항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이란 항소를 하면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거나, 항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당사자, 1심 판결, 항소취지)을 적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흠을 고치라는 재판장의 명령을 말합니다.

또한 재판장은 항소장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적어서 다시 제출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명령에 적혀 있는 기간 내에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그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져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지 않은 채 종료될 수 있습니다.

04

### 1심 패소자가 항소를 하면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해 지나요

1심 판결의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기재되어 있으면, 비록 항소되더라도 1심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인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에서 정해진 시점까지 1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05

### 항소인에게 1심보다 불이익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항소심은 항소인이 불복을 신청하는 한도에서만 1심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1심 판결 중 항소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부분에 잘못

이 있음이 드러나더라도, 항소인에게 1심보다 더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거나 경계확정소송, 공유물분할소송, 상계 항변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를 당한 상대방(피항소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취소 또는 변경해 달라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소이유에 관한 준비서면 및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 06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후 가장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으면, 여기에 기재된 제출기한 이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준비서면에는 1심 판결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였는지 밝히고,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사항을 간결하게 적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이 신청할 증거와 그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기재한 항소이유는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되어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충실하게 적어 내야 합니다. 이때 준비서면 대신에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07

반박 준비서면은 언제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나요

상대방은 항소인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을 때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준비명령을 받게 되며, 준비명령에 기재된 제출기한 내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박 준비서면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1심 판결의 잘못에 대한 반론을 기재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사항이나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자신이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사항과 신청할 증거 및 입증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08

준비명령에 기재된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준비명령에서는 통상 약 3주 내외의 준비서면 제출기한이 정하여지는데, 그 제출기한까지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한을 넘겨 뒤늦게 주장과 증거신청을 제출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항소심의 재판기일

### 09 항소심의 재판기일은 언제 열리나요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건접수 순서로 재판날짜가 지정되는데, 첫 재판 날짜는 일반적으로 항소장이 접수되고 5개월 이내에 지정됩니다. 다만 항소장의 송달이나 당사자의 준비서면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첫 재판기일의 지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재판기일을 지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건이 적체되어 당사자의 바람보다 재판기일이 다소 늦게 잡힐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10 항소심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증거조사를 충실히 한 것을 전제로 심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론기일로 진행합니다. 사건의 난이도, 추가 심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나 최종적으로는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을 준비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을 제외한 증거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11 재판 당일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개는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요약하여 말하고 1심에서 미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항에 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집중하여 상대방과 공방을 펼치기도 하고, 증인신청이 채택되면 증인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심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묻기도 합니다.

### 12 재판기일 전에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재판기일 전에는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막상 재판 날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은 미리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글로 써서 법원의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재판 당일에는 준비서면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여 주장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글로 자신의 주장을 쓰면 자신의 생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제출된 준비서면을 꼼꼼하게 읽고 재판을 열기 때문에 본인이 쓴 준비서면을 재판부가 제대로 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도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재판부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재판기일 약 1~2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3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각 재판부는 법정에서 당사자와 하는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나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이 진술할 차례가 되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그날의 재판기일을 마치려는 시점에서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지 묻고 재판부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때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글(준비서면)로 써서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는 말로 주장한 부분을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 재판부가 좀 더 세심하게 읽고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14 항소심 재판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고등법원의 항소심재판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없다면, 1회의 재판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 당일에는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반드시 출석하여 글로써 미처 표현하지 못한 주장과 증명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항소한 당사자가 항소심 재판기일에 2회(연속하여 2회가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고 한 달 내에 재판기일을 다시 열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취하되는 것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15 항소심 재판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항소심 재판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제출 시기, 증거조사 기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항소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 평균 8~9개월이 걸리나, 사안에 따라 짧게는 6개월 가량,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 중에도 당사자 사이에 조정, 화해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보다 신속하게 분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 항소심에서의 증거제출

### 16 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항소심은 1심 재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므로 1심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를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서류(서증)의 경우 새로운 증거만 1심에서 제출한 서증번호(원고 갑 제0호증, 피고 을 제0호증)에 연속된 번호를 붙인 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 17 증거서류의 제출이나 증거신청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

증거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증거서류를 읽고 재판기일에 참여하여야 당사자의 주장을 더욱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증거서류는 그 사본을 제출하면서(원본은 제1회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증거서류를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입증취지)를 설명한 증거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인신청이나 감정신청 등 각종 증거신청서는 반드시 재판기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또 다른 재판기일을 열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는 한 번 더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8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할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을 원칙적으로 다시 신문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증인의 증언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증언을 듣기 위해 증인신문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1심의 증인신문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사건의 해결에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1심의 증언 내용을 모를까 봐 불안해할 일은 아닙니다.

## 19 1심에서 감정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할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1심의 감정절차나 감정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없는 한 재감정을 하지 않으며, 오류가 있더라도 재감정 대신에 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사 감정보완촉탁을 하여 회신을 받는 방식으로 오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신청시에는 왜 재감정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일 재감정신청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한계 때문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20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1심에서 증거신청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 코너(<http://help.scourt.go.kr/nm/main/>)의 양식모음란 또는 재판서식집을 참조하거나, 법원 접수 창구에 비치된 증거신청양식을 활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 넣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증거신청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채택하여 직접 관련 기관에 촉탁을 보내어 회신을 받습니다. 다만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재판부의 촉탁 외에 당사자가 관련 기관에 가서 회신할 문서의 범위를 지정하는 행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나 검증·감정, 사실조회신청이 채택되는 경우 증거를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여비, 검증·감정비용, 사실조회 비용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거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전자민원센터의 절차안내란 중 민사 증거신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

### 21 항소심에서도 화해·조정이 가능한가요

항소심에서도 화해·조정이 가능합니다. 판결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수단이지만,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판결의 확정기 늦추어지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패소한 당사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집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결방안을 이끌어낸다면, 분쟁이 원만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과정에서 나가는 인지대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화해·조정을 원할 경우 그러한 뜻을 준비서면에 적어서 제출하거나 해당 사건의 재판기일이 진행될 때 재판부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22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화해·조정과정에서 적절한 화해·조정안이 나왔으나 가벼운 의견차이가 있거나 감정적인 문제로 화해·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양 당사자에게 조정·화해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 항소심의 종료

### 23 항소심 판결은 어떤 형식으로 나오나요

1심 판결은 소송으로 제기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즉 '승소', '패소', '일부승소·일부패소'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의 형식은 1심 판결과 달리, '항소각하', '항소기각', '취소·변경'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항소각하'란 항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고칠 수도 없을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1심에서 전부 이긴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대하여 이루어진 항소, 항소법원을 잘못 택한 항소 등에 대하여 내려집니다.

'항소기각'이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1심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서 제시된 이유와는 다른 이유로 판단하더라도 결론이 1심 판결의 결론과 같다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취소·변경'이란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1심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입니다.





24

항소취하는 어떻게 하며, 항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항소심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항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항소취하를 할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이미 제기하였던 항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인은 항소를 제기할 때 지급한 인지대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항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의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고(연속하여 2회가 아닙니다),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그와 같은 신청에 따라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5

항소심에서도 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소취하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에서도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언제든지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고자 할 경우 피고의 동의를 있어야 합니다. 피고의 동의가 있으면 소취하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지만,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소취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소취하서를 피고에게 송달하는데,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가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에서 소취하가 이루어지면 원고는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자소송과 항소심

26

전자소송을 하면 어떤 점이 편리한가요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수 있고, 소송기록을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인지대가 10% 감액되며 송달료도 절감되는 등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게 됩니다.

27

1심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항소심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나요

1심에서 한 전자소송 동의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므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항소심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했던 당사자는 항소심에서도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은 본인과 별도의 전자소송 동의절차를 거치므로, 1심에서 변호사가 전자소송 동의를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의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1심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았던 당사자는 언제든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는 때부터 전자소송의 혜택(전자제출, 전자송달, 전자열람 등)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8

1심이 전자소송이 아니었는데 항소심에서 전자소송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자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통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재판장이 전자소송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장의 허가명령이 있으면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전환되어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송달받고 소송기록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전자소송전환신청이 불허가되면 그대로 종이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민사항고 절차

29

항소와 항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항고는 1심 법원의 결정 또는 1심 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입니다. 재판서 맨 윗부분에 판결과 결정, 명령 형식이 나오므로, 이를 보고 불복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30

항고사건도 재판이 열리나요

항고는 항소와 달리 심문기일을 열어 재판하는 경우에도 대개 단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문기일을 잘 확인해 두었다가 출석해야 합니다.

쟁점이 간단하고 단순한 일부사건은 심문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종결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심문기일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주장은 미리 서면으로 적어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민사집행에 따른 즉시항고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질적인 불복이유를 적은 항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1

항고심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항고심의 결정은 따로 재판을 열어 법정에서 고지하지 않고 본인의 주소 등 송달받기로 한 주소로 결정문을 보내줍니다.

항고를 받아들일 때에는 항고인의 상대방에게도 고지합니다. 하지만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할 때에는 그 결정을 항고인에게만 고지하고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함으로써 사건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

### 32 항소심 사건의 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소인은 당사자 1인당 12회를 기준으로 계산한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항소인·피항소인이 각 1인인 경우, 1회 송달료 3,060원×12회분×2인).

항소인은 1심 판결 중 불복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소송목적의 값에 대하여 1심에서 붙이는 인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의 계산과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대법원 나홀로소송코너(<http://pro-se.scourt.go.kr/>)의 '인지대·송달료 계산하기' 기능과 소송의 준비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3 항소심 단계에서도 소송구조(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를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송구조요건에 해당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재판지원코너(<http://help.scourt.g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4 민사소송기록의 열람·복사는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또는 각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포함), 소송대리인,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청구는 모두 종합접수실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사 신청인은 법원의 복사기 등을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록을 복사하는 경우에는 기록이 분실, 파손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그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등에게는 열람·복사신청 1건마다 부과되는 5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복사물의 교부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판기록 중 녹음테이프 등의 복제시에도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35 인지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지 환급대상은 소장각하,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변론종결 전에 취하여야 환급사유가 됨), 청구의 포기·인낙, 조정·화해 등으로 종결된 사건으로서 위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위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면 당사자에게 환급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위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 36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심을 담당했던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법원에 직접 제출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상고장에는 1심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상고 이유로 하는 경우만 심리하며, 사실관계가 맞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7 상고심 단계에서도 소송구조(상고장 인지대 등)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재판인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하여, 사실관계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의 법률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고심에서 소송상 구조를 신청하여 상고장에 첨부하여야 하는 인지대금의 지급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비록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 그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근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8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상고법원의 참여사무관은 원심법원의 참여사무관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상고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